서울특별시 동작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6년 1월 7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01/04 이창우

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803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동작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중 “서울특별시동작구”를 “서울특별시 동작구”로 “「지방재정투·융자사업 심사규칙」”를 “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」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,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(2 이상의 시·군·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)(단, 총사업비 중 시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은 시 심사 의뢰)

2.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(자치구비, 단 지방채를 제외한다)으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(2 이상의 시·군·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)

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.

1.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. 단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(심사 당시 총사업비-500억원)×20/100+150억원

제4조제2호 및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삭제하고, 제3호를 제2호로 한다.

제5조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총 사업비가 4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자치구 신규 투자사업(2 이상의 시·군·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)

2.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자치구의 청사 및 문화·체육시설 신축사업(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포함)

제5조의2 본문 및 제5호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행정자치부장관“으로 하고,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자치구 신규 투자사업(2 이상의 시·군·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) 단, 전액 시비, 전액 자치구비 또는 시·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, 1차 심사는 3월 10일까지,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,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,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“2월 28일”를 “2월 10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제3호제4호를 각각 제3호제4호제5호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2호를 신설한다.

2. 2차 심사 : 4월 30일까지

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1차 심사 : 2월 5일까지

2. 2차 심사 : 3월 27일까지

3. 3차 심사 : 6월 24일까지

4. 4차 심사 : 7월 28일까지

제11조제1항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,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한다.

①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원(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)과 공무원(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)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제3항을 다음과 신설한다.

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11조제3항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”을 “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”으로, “연임”을 “한차례만 연임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동작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
□ 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」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후속조치로, 자치구 투자사업 심사기준 및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 투자심사 관련 주요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

- 「지방재정투·융자사업 심사규칙」을 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」으로 변경

나. 심사대상 사업 규정

다. 재심사 대상에 대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

라. 심사 횟수 및 심사 시기 규정

마. 심사위원회 구성안 정비